

Cenox와 유사 휘발유 논쟁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저가 유사휘발유들이 범람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초 등장한 연료첨가제 Cenox가 날개돋친 듯 팔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LP파워와 ING 같은 세녹스 아류제품도 등장했다.

2002년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산업자원부로부터 불법 유사휘발유로 낙인찍혀 단속대상이 된 세녹스는 2003년 들어 목포공장의 생산량을 하루 30만리터에서 130만리터로 증설하는 등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휘발유 대신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 1300원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세녹스와 LP파워를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짓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지만 관계기업들은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정식 승인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산자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Cenox가 용제(Solvent), 메틸알콜(Methyl Alcohol), 톨루엔(Toluene) 등을 60대10대30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 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에는 미달하고, 첨가제로서 환경기준에는 일단 합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공급차단 △시도·국세청 등과의 공조단속 △국세청을 통한 세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목포세무서는 2002년 6월에서 12월까지 세녹스 판매량 8만3000배럴에 대해 세금 99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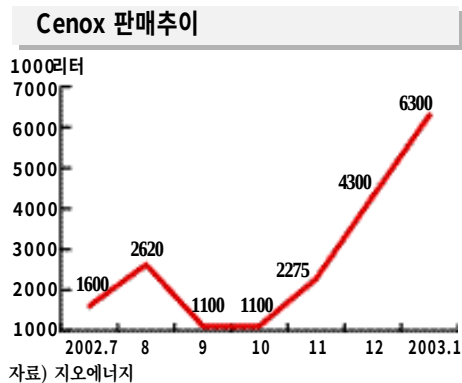
논점은 세녹스가 연료첨가제이나, 아니면 유사휘발유이나 하는 것이다. 프리플라이트는 알코올이 법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인지 불분명하고, 세녹스는 알코올에 톨루엔 및 용제를 섞은 것이어서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열거된 ①석유제품+다른 석유제품 ②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③석유화학제품+다른 석유화학제품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석유사업법 26조를 근거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정의가 현행법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석유화학제품은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정의)는 석유를 원유·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은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라고 단정하고 있다.

프리플라이트와 산자부는 자동차 연료로서의 성능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녹스가 과연 유사휘발유이나, 아니면 연료첨가제이나의 해묵은 언쟁만 벌이고 있다. 핵심사안인 휘발유 대체연료나 연료첨가제로서 성능적으로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점이 문제이다.

특히, 산자부의 주장은 세녹스가 휘발유의 40%까지 혼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료첨가제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본격적인 연료제품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도 휘발유의 40%까지 첨가할 수 있다면 휘발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첨가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도 세녹스 문제가 불거지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03년 6월까지 개정해 Methanol을 Toluene과 Xylene 등 석유화학제품에 혼합해 제조하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혼합비율을 2003년 하반기부터 1% 이하로 규제키로 결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첨가비율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지오에너지는 2003년 4월부터 남아프리카 Sasol과 제휴해 액화석탄연료 솔렉스(Sollex)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솔렉스는 연료인가, 아닌가 묻고 싶다.

휘발유와 석유화학제품은 연료 성능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 첨가비율이 40%에 달하면 첨가제인가, 아니면 본질제품인가? 논쟁의 요체는 바로 2가지이다.

<화학저널 2003/3/17>